



건강을 더하고 부담은 빼고 소통은 곱하고 배려를 나누겠습니다

2026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

h·well

국민건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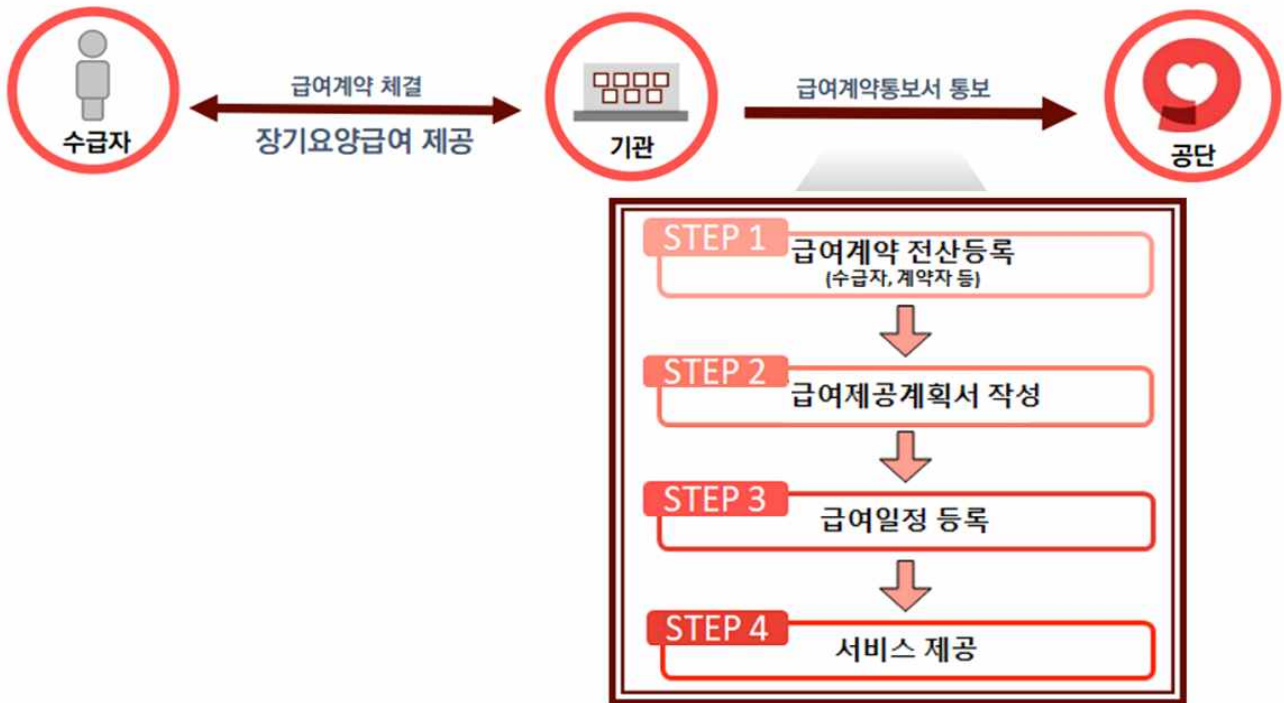


요양심사실

목 차

1. 급여계약통보서	3
2. 입소 · 이용의뢰서	5
3.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9
4. 급여계약내용 전산 등록	12
가. 재가급여 급여계약내용 전산등록	12
나. 시설급여 급여계약내용 전산등록	23
5. 급여계약통보서 해지	24
6. 기타 전산등록	26
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전산등록	26
나. 월금액 재산정	28
다. 지급이후 통보 전산등록	29
라. 급여계약통보서 화면 구성	31
7. 급여계약통보서 다빈도 질의사항	33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목차



Q1

‘급여계약통보서’란 무엇인가요?

A1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 월별 급여제공 내용 등)을 통보하는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1호의2서식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Q2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A2

-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게시위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표준약관 사용 시 주의사항

- 1)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마크)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장기요양급여의 계약 등)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고시 및 급여비용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1

관련 질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두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여 모두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및 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급여 중 '의료급여' 지원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 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9. 「재해구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예) 수급자 A(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음) → 입소·이용의뢰 신청 X
수급자 B(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음) → 입소·이용의뢰 신청 O

Q2

입소·이용의뢰서를 새로 승인받아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 지자체의 승인 금액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입니다.

구분	예시
갱신, 등급변경 신청한 경우 (재가급여 이용 시만 해당)	• 갱신, 등급변경 신청으로 등급 인정된 경우(같은 등급으로 나온 경우 포함)
급여종류 변경(추가)되는 경우	• 방문요양만 이용 → 방문목욕도 추가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장기요양기관이 변경된 경우	• 방문요양 → 노인요양시설
	• 영등포구 → 강남구
	• A기관 → B기관 변경
	• 개인 → 법인으로 기관기호 변경된 경우 등

※ 시설급여의 경우, 갱신 등으로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되었어도 동일시설에 계속 입소한 상태에서는 기존 입소·이용의뢰서가 유효하나, 퇴소 후에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이용을 재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관련 기준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 참고 (게시: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2026]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안내)



Q3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급여계약통보서 등록/입소이용의뢰서 통보내역
- 승인기간, 급여종류, 승인금액, 발급보장기관, 관할보장기관 등 확인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nplal01m01 급여계약통보서 초기화 저장 닫기

장기요양대상자 신규등록 관선등록 추가등록 수급자 조회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인정종급 인정유효기간 입력 저장

급여종류 기관유형 재가급여제출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류 직종등급

계약자 및 계약내용 불러오기 내용수정

* 계약자 성명 *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지역) - -

* 전화번호(핸드폰) * 계약일자 - -

* 계약기간 주소

계약내용 계약통보서이력조회

NO	삭제	계약일자	계약자성명	계약자전화번호	수급자명	수급자인정번호	SEO	인정유효기간	계약기간	급여종류

입소이용의뢰서 통보내역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내역

접수일자	승인일자	승인기간	급여종류	승인금액	발급보장기관	관할보장기관	삭제여부
		2024-11-29 ~ 2027-11-28	방문요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N
		2024-01-01 ~ 2024-11-28	방문요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N

A3

- 승인기간: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적용 기간
 - 급여종류 및 승인금액: 급여종류별 승인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 이용 가능
 - 발급보장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승인해준 보장기관(시군구)
 - 관할보장기관: 수급자의 의료급여자격을 관할하는 보장기관(시군구)
- ※ 관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현재’ 의료급여자격을 관할하는 보장기관으로 표출됨

참고

1. 입소·이용의뢰서의 이용가능 비용, 범위 등은 전적으로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승인하며 공단은 조회만 가능하므로 수정 및 등록은 관할보장기관 시군구로 문의 필요
2. 시군구에서 전송한 입소·이용의뢰서는 다음날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Q4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을 받았는데도 기관 업무포털에 승인금액 0원, 승인초과금액이 뜨는데 왜 그런가요?

수급자의 '의료급여자격 상의 관할 보장기관'과 '입소·이용의뢰서를 발급한 보장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승인금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자격 상의 관할 보장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소이용의뢰서 통보내역					
접수일자	급여종류	승인금액	발급보장기관	관할보장기관	삭제여부
	발문요양	482,400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장기요양대상자		자격	기초	인정유효기간	2023-07-01 ~ 2027-06-30	계약기간	2024-10-07 00:00 ~ 2027-06-30 24:00
성별	성	실기요양인정번호		인정유효기간	2023-07-01 ~ 2027-06-30	계약기간	2024-10-07 00:00 ~ 2027-06-30 24:00

급여일정등록 변경		* 급여일정 종료시간이 익일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확장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인쇄(금액)		지급 이후 동보																							
삭제	요양요원	프로그램 관리자	가족 여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횟수	전제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00	09:00	60분	20																																

이용횟수	인정유효기간	타기관포함 인정유효기간	월금액	타급여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승인금액	승인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0	0	0	원	원	2,089,900 원	0 원	0 원	482,400 원	0 원

계약통보서 해지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으로 급여일정을 등록하여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산정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등급	(화)	(수)	(목)	(금)	(토)	(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역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해지여부																															
해지시간																															

A4

관련 질의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의미하나요?

A. 아니요.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의료급여자격을 취득한 시군구를 의미하며 행망주소지, 실거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을 확인 후 해당 시군구에서 입소·이용의뢰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시

(상황) 수급자(기초)가 A지역 → B지역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 완료
B시군구에서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금액이 0원으로 뜸

(원인)

- B지역으로 전입신고는 완료(행망주소지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은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A시군구로 되어있는 경우로
- '의료급여자격 상의 관할 보장기관(A시군구)'과 '입소·이용의뢰서를 발급한 보장기관(B시군구)'이 상이하여 발생한 문제

(해결) (시군구 문의)

- ① 수급자(기초) 현재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이 A시군구인지 B시군구인지 재확인
- ②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이 A시군구인 경우: A시군구에서 입소이용의뢰서 재발급
- ③ 의료급여 관할 보장기관이 B시군구인 경우: B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자격을 새로 취득하여 의료급여 보장기관을 B시군구로 변경 요청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재가)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npla101m01

급여계약통보서 초기화 저장 닫기

장기요양대상자 2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L-

인정등급 인정유효기간 3 입력 저장

급여종류

*기관유형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류 적용등급

① '등록' 버튼 클릭

- 신규등록: 최초 계약
- 갱신등록: 갱신, 등급변경으로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이 생성되어 계약 등록을 하는 경우
- 추가등록: 인정유효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추가로 계약 등록을 하는 경우
 - ※ 갱신·추가 등록은 편의기능으로 신규등록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계약통보 가능함
- 수급자 조회: 해당 기관의 수급자 전체 조회가능

② 장기요양인정서 바탕으로 '장기요양대상자'에 수급자의 정확한 인정정보 내용 입력

③ '입력' 클릭 후 해당 '급여종류' 선택

참고 급여계약통보서 등록(시설)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npla101m01

장기요양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L-

인정등급 인정유효기간 급여유효기간 입력 저장

급여종류

*기관유형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류 적용등급

- 인정유효기간에 급여유효기간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인정유효기간을 입력하면 '급여유효기간' 자동으로 입력됨
 - ※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등급을 인정받은 기간
 - 급여유효기간: 인정유효기간 내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기간

□ 계약자 및 계약내용

□ 계약자 및 계약내용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지역) - -

*전화번호(핸드폰) *계약일자

*계약기간 주소

불러오기 내용수정

- 계약일자: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짜(계약기간의 시작일자 이전 날짜로 등록 가능)
- 계약기간: 전체 계약기간
- 불러오기: 과거 계약자 정보이력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 사용 가능
- 내용수정: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약기간·시간, 계약일자 수정 가능
 - ※ 주소 수정 불가

참고 '내용수정' 수정 가능 범위

- 내용수정 버튼을 눌러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약기간·시간, 계약일자 수정 가능
- 계약기간: 시작일은 최초 입력한 시작일 이후로 수정 가능하며, 종료일은 수정 불가
 - ※ 종료일은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에서 '계약해지'로 수정 가능
- 계약시간: 계약시작일의 계약시간 수정 가능하나 처음 입력한 계약 시간 이후로 수정가능
- 계약일자: 처음 입력한 계약일자 이후 및 계약기간의 시작일자 이전 날짜로만 수정 가능

다빈도

1.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2025.6.16. 이후의 날짜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 계약종료일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추가하고 싶은 기간만큼 급여계약 '추가등록'으로 등록

2. 계약기간 2026.1.1. 09시00분~2026.12.31. 등록 후 계약시작 날짜, 시간 수정 하고 싶습니다.

- 2026.1.1. 날짜 이전으로 수정 불가능
 - 2025.12.31.으로 날짜 수정 불가, 2026.1.1. 00시 00분으로 시간 수정 불가
- 2026.1.1. 날짜 이후로 수정 가능
 - 2026.1.1. 12시00분 시간 수정 가능, 2026.1.2.으로 날짜 수정 가능

□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통보서이력조회
NO	삭제	계약일자	계약자성명	계약자전화번호	수급자명	수급자인정번호	SEQ	인정유효기간	계약기간	급여종류
1	삭제	2023-11-15					100	2022-07-29 ~ 2024-07-28	2023-11-15 ~ 2024-07-28	발문요양

- 계약 통보서에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저장' → 하단의 계약내용에 조회됨(과거 계약내용 조회 가능)
- 삭제: 계약기간 내 계약통보서 내용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계약 삭제 가능
 - ※ 삭제 시, 복구 불가하므로 주의!!

□ 입소이용의뢰서 통보내역

입소이용의뢰서 통보내역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접수일자	승인일자	승인기간	급여종류	승인금액	발급보장기관	관할보장기관	삭제여부	
2024-10-	2024-11-29	2024-11-29 ~ 2027-11-28	방문요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N	

- 시군구에서 입소이용의뢰서 승인하여 공단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내역에서 조회 가능
- 승인기간: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적용 기간이 있으므로 시작날짜~종료날짜 확인
- 급여종류: 이용하고자 하는 급여종류와 승인받은 급여종류가 동일한지 확인
- 발급보장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승인해준 보장기관(시군구)
- 관할보장기관: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한 보장기관(시군구)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버튼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급여계약내용 전산 등록) 목차

□ [재가급여 공통] 화면: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npla103n01

급여계약통보서 초기화 저장 인쇄 닫기

1. 계약년도: 2023-01-01 ~ 2024-01-22 계약종별: 급여종별

수급자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L- 조회

2. 계약내용

성명	등급	생년월일	급여종류	계약일자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최종급여제공일자	비급여항목없음
4등급			방문요양	2023-09-21	2023-09-21	2023-09-30	2023-09-28	
3등급			방문요양	2023-09-25	2023-10-01	2023-09-30	2023-11-30	

월별내역

년월	횟수	총금액
2025-09	0	C
2025-08	0	C
2025-07	0	C
2025-06	0	C
2025-05	0	C
2025-04	0	C
2025-03	0	C
2025-02	0	C
2025-01	0	C
2024-12	0	C
2024-11	0	C
2024-10	0	C
2024-09	0	C
2024-08	0	C
2024-07	0	C
2024-06	0	C
2024-05	0	C
2024-04	0	C
2024-03	0	C
2024-02	0	C
2024-01	0	C
2023-12	0	C
2023-11	12	634,560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npla107p01]

※ 중복 장광은 저장 및 통보시 누락됩니다. 저장 및 통보 닫기

년월: 2024년 5월 대상자: 조회

장기요양대상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3-11-02 ~ 2025-11-01 계약기간: 2023-11-20 00:00 ~ 2025-11-01 24:00

급여일정등록/변경

☐ 확정 ☒ 일력 지날일정 수정 지날일정 수정미력 인쇄 인쇄(일력) 지급 이후 통보

식별	요일요일	가족	수거명	시작	종료	제공	횟수	전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종금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자격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새지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지시간																																							

이동횟수: 0 월금액: 0 원 단급어포함 월금액: 0 원 월한도액: 0 원 월한도 초과금액: 0 원 월한도 미포함금액: 0 원

계약일부서 세지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으로 근대일정을 등록하여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산정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① 계약년도, 계약기간, 급여종별, 수급자명 등으로 선택하여 '조회'
- ② 해당 수급자의 '계약내용' 확인 후 클릭하면
- ③ '월별내역'에서 해당 급여종별 계약기간 만큼 급여제공 년월별로 조회된 통보하고자 하는 월의 '월별내역(행)' 더블 클릭 시
- ④ '급여계약내용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일정등록 가능함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 및 통보해야 해당화면에서 일정등록 가능함



□ [방문요양]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① 급여제공년월, 수급자의 급여종별을 선택하여 재조회 가능
- ② '입력' 버튼 누르면 '종사자검색' 팝업 생성
- ③ 해당 종사자 '선택'란에 체크
- ④ '아래 화살표' 클릭
- ⑤ '선택한 요양보호사'에 해당 종사자가 표출되고 가족 여부, 급여제공시간 입력
- ⑥ '입력' 버튼 클릭

참고 '입력 vs 지난일정 수정 vs 지급이후통보'

- 입력: 급여제공 일정을 등록하기 위하여 종사자(요양요원, 프로그램관리자 등) 선택, 급여제공 시작시간, 종료시간 입력 가능 (예시) 11.7.일에 11.8.일의 서비스 일정등록을 하는 경우
- 지난일정 수정: 급여제공 종료시간이 경과한 급여제공 일정은 '지난일정 수정'으로 수정 (예시) 11.7.일에 11.6.일의 서비스 일정등록을 하는 경우
- 지급이후 통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지급통보서가 통보된 이후 자진환수, 일정 누락의 사유로 급여일정을 단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입력 가능

참고 '지난일정 수정' 입력 방법

- 지난일정 삭제: ①지난일정 수정 → ②수정사유 선택 후 수정 → ③급여제공일자 체크박스 해제
- 지난일정 등록: ①지난일정 수정 → ②수정사유 선택 후 수정 → ③입력 → ④일정등록

☐ **(방문요양)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illegible]

- ⑦ '급여일정등록·변경'란에 급여일정이 생성되면 해당 '일자'를 선택
※ 해당 일자에 마우스를 올리면 '일 수가' 확인 가능
- ⑧ 등급, 자격 확인 후
- ⑨ '월금액 재산정' 버튼 클릭
※ 일정 수정 후 또는 월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월금액 재산정" 버튼 활용(P.28 참고)
- ⑩ '저장 및 통보' → **급여계약내용 통보 완료**
- ⑪ 등록된 급여계약통보서의 급여일정 횟수, 금액, 월 한도액, 승인금액 등 확인

다빈도 **요양요원의 인력승인이 나기 전 [종사자 입력]으로 수기등록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종사자검색' (Employee Search) window. On the left, the search criteria panel has '종사자 입력' (Employee Input)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1. On the right, the search results panel shows a table with columns: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가족 여부' (Family Status),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 '근무시작일자' (Start Date), '발급일자' (Issue Date), and '직종' (Job Type). The first row, '홍길동(신규)' (Hong Gildong (New)),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3.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search criteria panel to the results panel.

- ① '종사자검색' 팝업에서 [종사자 입력] 탭 선택
 - ② 해당 종사자의 내용 입력 (지자체 신고내역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함)
 - ③ 수기로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 탭에서 종사자 성명 옆에 '(신규)'로 표기됨
- ※ 지자체에 입력신고가 된 경우 종사자 수기등록 불가하며 입력신고 수리 후 (신규)글자가 사라짐

참고 인지활동형(프로그램) 방문요양 일정 등록 방법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npia107p01]

※ 중복 점검은 저장 및 통보시 수행됩니다. 저장 및 통보 닫기

년월 [2024년] 대상자 조회 **1**

장기요양대상자 계약통보서 재지 원금액 재산정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일반 인정유형 **2** 2023-11-02 ~ 2025-11-01 계약기간 2023-11-20 00:00 ~ 2025-11-01 24:00

급여일정등록 변경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여력 안재 안재(달력) 지급 이후 통보

알림 메시지 메시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가능한 수급자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일반 방문요양으로 등록하시려면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확인 취소

종사자검색 [npia115p01] 닫기

종사자 종사자 입력

종사자명 조회 ☒ 종사자 입력 포함 삭제

3	치매교육 이수	성명	생년월일	가족 여부	가족관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이수					2019-06-01	2010-04-01	시설장(관리책임자)
☐						2023-10-04	2020-04-24	요양보호사
☐						2022-11-30	2015-05-13	요양보호사
☐	이수					2022-12-29	2008-11-10	요양보호사
☒	이수					2023-07-17	2023-03-06	요양보호사
☐						2019-12-02	2009-05-12	요양보호사
☐						2022-04-23	2019-05-20	요양보호사

조회결과 45 건 **4** ▼

5 선택한 프로그램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2019-06-01	2010-04-01	시설장(관리책임자)

5 선택한 요양보호사

성명	생년월일	가족 여부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2023-07-17	2023-03-06	요양보호사

6 입력

- ② '입력' 누르면 인지활동형 등록 여부 팝업 생성 → [확인] → '종사자검색' 팝업 생성
※ 인지활동형 제공 가능 수급자인 경우만 인지활동형 등록 여부 팝업 자동 생성
- ③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한(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종사자 선택
- ④ '아래 화살표' 클릭
- ⑤ '선택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선택한 요양보호사' 나타나며 가족 여부, 급여제공시간 입력
- ⑥ '입력'

□ [방문목욕]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npia107p01]

※ 중복 점검은 저장 및 통보시 수행됩니다. (방문목욕)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2025년 5월 * 대상자 조회 1

장기요양대상자 계약통보서 해지 월금액 재산정

설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3-10-06 ~ 2025-10-05 계약기간 2023-10-10 00:00 ~ 2025-10-05 24:00

급여일정등록 변경 입력 지날일정 수정 지날일정 수정이력 인쇄 인쇄(달력) 지급 이후 통보

삭제 요양원 종사자검색 [npia115p01] 닫기

종사자 종사자 입력 닫기

* 종사자명 조회 ☒ 종사자 입력 포함 삭제

선택	성명	생년월일	가족 여부	가족관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2015-02-11	2014-08-22	요양보호사
☒					2016-08-19	2012-08-27	요양보호사
☐					2018-12-25	2009-04-06	요양보호사
☐					2013-07-30	2012-09-03	요양보호사
☐					2022-09-21	2012-09-03	요양보호사
☐					2017-08-01	2016-12-13	요양보호사
☐					2023-04-21	2023-03-17	요양보호사

조회결과 91 건 4 ▼

선택한 요양보호사 5

성명	생년월일	가족 여부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08:00	09:00	2018-12-25	2009-04-06	요양보호사
		☐	08:00	09:00	2013-07-30	2012-09-03	요양보호사

* 추가선택 6 선택

정답: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40분이상 60분미만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0분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40분이상 60분미만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분이상 60분 미만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1인 품씻기)

7 입력

- ① 급여제공년월, 수급자의 급여종별을 선택하여 재조회 가능
- ② '입력' 버튼 누르면 '종사자검색' 팝업 생성
- ③ 해당 종사자(방문목욕; 2인 이상 등록) '선택'란에 체크
- ④ '아래 화살표' 클릭
- ⑤ '선택한 요양보호사'에 해당 종사자가 나타나고 가족 여부, 급여제공시간 입력
- ⑥ 방문목욕 '추가선택'
- ⑦ '입력' 버튼 클릭

※ 요양보호사 3명 이상 선택할 경우, 가족여부, 대표여부(2인 지정), 급여제공시간 입력 → 급여일정등록·변경 화면에서는 대표요양보호사 2명만 표시가 되고 커서를 가져다 대면 등록된 모든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보여줌

□ [방문간호]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급여계약내용 등록(제거)[npia107p01]

* 중복 점검은 저장 및 통보시 수행됩니다. (방문간호)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2025년 5월 • 대상자 [] 조회 1

장기요양대상자
 설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일반 2 인종유효기간 3 04-24 ~ 2026-04-23 계약기간 2023-04-24 00:00 ~ 2026-04-23 24:00 계약종류사 해지 월급액 재산전

급여일정등록 변경 ☐ 확장 방문간호지시서 등록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계약력 인쇄 인쇄(달력) 지급 이후 통보

방문간호지시서 등록 [npia305m01]

방문간호지시서 목록

상태	발급번호	의료기관명	발급일	유효기간
1			0000-01-01 토	0000-01-01 토

방문간호지시서 등록

발급번호 []

• 의료기관기호/명 []

• 발급일 []

• 유효기간 []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 까지 입니다.

• 의사면허번호 [] • 발급의사구분 []

• 방문주기 [] • 방문횟수 []

해지여부 ☐ 해지시간 []

중사자 검색 [npia115p01]

중사자 중사자 입력 ☒ 중사자 입력 포함

선택	성명	생년월일	가족 여부	가족관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4					2021-07-22	1996-04-03	간호사
☐					2020-04-01	1992-04-06	간호사
☐					2023-09-01	1992-04-06	시설장(관리책임자)
☐					2023-09-01	1992-04-06	간호사
☐					2021-10-14	1997-04-26	간호사
☐					2021-09-05	1994-03-17	간호사
☐					2019-05-22	2014-03-05	간호사

조회결과 14 건 5

선택한 요양보호사

성명	생년월일	건강관리 서비스	가족 여부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			2021-07-22	1996-04-03	간호사

6

7 입력

- ① 급여제공년월, 수급자의 급여종별을 선택하여 재조회 가능
- ② '방문간호지시서 등록' 버튼 클릭 후 내용 입력
- ③ '입력' 버튼 누르면 '중사자검색' 팝업 생성
- ④ 해당 중사자 '선택'란에 체크
- ⑤ '아래 화살표' 클릭
- ⑥ '선택한 간호(조무)사'에 해당 중사자가 나타나고 가족 여부, 급여제공시간 입력
 ※ 방문간호(건강관리) 또는 방문간호(치매관리_60일 한정) 급여이용 가능 대상 수급자는 전산에서 자동 생성되어
 이용여부 체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음
- ⑦ '입력' 버튼 클릭
 ※ 일정등록하려는 날짜에 등록된 방문간호지시서가 없거나 날짜가 유효하지 않으면, 안내 팝업생성 되나
 닫기 후 일정등록 가능. 단,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가 등록되어야 청구 가능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 마목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급여계약내용 등록(제가)[npia107p01]

(주야간보호) 저장 및 통보 닫기

년월 2024년 5월 대상자 조회 1

장기요양대상자 계약통보서 해지 월금액 재산정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기초 인정유효기간 2023-02-05 ~ 2024-02-04 계약기간 2023-02-05 09:00 ~ 2025-02-04 24:00

급여일정등록 변경 가족요양 이용 여부를 선택하세요. 2

가족요양 이용 여부를 선택하세요.
Y : 가족요양 이용
N : 가족요양 미이용

입력 3

급여일정등록 [npia115p02]

급여일정 4

미이용(코로나) 미이용일 적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입력 5

- ① 급여제공년월, 수급자의 급여종별을 선택하여 재조회 가능
- ② '가족요양 이용 여부' 선택 ※ 가족요양 이용여부 반드시 확인
- Y: 가족요양 이용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불가
- N: 가족요양 미이용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건 충족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③ '입력' 버튼 누르면 '급여일정등록' 팝업 생성
- ④ 급여제공시간 입력
- ⑤ '입력' 버튼 클릭

※ '가족요양 이용 여부'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유무가 변경되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가족요양 이용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참고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주·야간보호 일정 등록 방법

급여계약내용 등록(제가) [npia107p01]

(주야간보호) 저장 및 등록 닫기

년월 2024년 대상자 [] 조회

참가요양대상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인정유효기간 2022-12-01 ~ 2025-12-03 계약기간 2022-12-04 00:00 ~ 2025-12-03 24:00

급여일정등록-변경 가족요양 이용 여부를 선택하세요. ☐ 확장 적기통보내역 등록 입력 지남일정 수정 지남일정 수정이력 인쇄 지금 이후 등록

필드 메시지

? 인지활동등록 또는 등록 수급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확인] 선택 시: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취소] 선택 시: 일반 주야간보호, 코로나(미이용), 미이용일 적용

확인 취소

필드 메시지

! '23년 1월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1월이라도 제공받은 월에는 주야간보호를 월15일 (1월8시간이상) 이용하여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가족요양여부를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종사자검색 [npia115p01]

종사자 검색종사자 입력

종사자명 [] 조회 ☒ 종사자 입력 포함 삭제

선택	치매교육 이수	성명	생년월일	가족 여부	가족관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2022-01-01	2021-05-03	사회복지사
☐						2019-09-12	2013-08-05	간호조무사
☐						2023-11-13	2016-03-03	간호사
☐						2023-04-03	2013-03-18	사회복지사
☐	이수					2018-03-02	1994-03-17	간호사
☐	미수					2024-03-06	2018-03-26	사회복지사
☐						2018-04-06	2012-10-12	시설장(관리책임자)

조화일과 15건

선택한 프로그램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미이용 (코로나)	미이용일 적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시작일자	발급일자	직종
		☐	☐			2024-03-06	2018-03-26	사회복지사

입력

- ② '입력' 누르면 인지활동형 등록 여부 팝업 생성 → [확인] → 가족인 요양보호사 이용여부 등록 필수 안내 팝업 생성 → [확인] → '종사자검색' 팝업 생성
※ 인지활동형 제공 가능 수급자인 경우만 인지활동형 등록 여부 팝업 자동 생성
- ③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종사자 선택
- ④ '아래 화살표' 클릭
- ⑤ '선택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선택한 요양보호사' 나타나며 가족 여부, 급여제공시간 입력
- ⑥ '입력'

□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등록 방법]

급여계약통보서 등록(제가)[npia107p01]

(주야간보호)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2024년 5월 * 대상자 [] 조회

장기요양대상자

*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 자격 기초 * 인정유형 1 2023-02-05 ~ 2 -02-04 계약기간 2023-02-05 09:00 ~ 2025-02-04 24:00

급여일정등록 변경 가족요양 이용 여부 [] 확인 적기통보내역 조회 입력

적기통보내역

급여제공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2024-05-01	09:00	17:30
2024-05-02	09:00	17:30
2024-05-03	09:00	17:30
2024-05-04	09:00	17:30
2024-05-06	09:00	17:30
2024-05-07	09:00	17:30
2024-05-08	09:00	17:30
2024-05-09	09:00	17:30
2024-05-10	09:00	17:30
2024-05-11	09:00	17:30
2024-05-13	09:00	17:30
2024-05-14	09:00	17:30
2024-05-15	09:00	17:30
2024-05-16	09:00	17:30
2024-05-17	09:00	17:30
2024-05-18	09:00	17:30

급여일정

미이용(코로나)	미이용일 적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	☐		

급여일정등록 변경 N : 가족요양 미이용

서비스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미이용 (코로나)	미이용 (기초)	전제 선택	1 (수)	2 (목)	3 (금)	4 (토)	5 (일)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11 (토)	12 (일)	13 (월)	14 (화)	15 (수)	16 (목)	17 (금)	18 (토)	19 (일)	20 (월)	21 (화)	22 (수)	23 (목)	24 (금)	25 (토)	26 (일)	27 (월)	28 (화)	29 (수)	30 (목)
09:00	17:30	510분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내용 입력 상태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적기통보내역 조회' 클릭하여 적기통보내역 확인
- ② '입력' 버튼 누르면 '급여일정등록' 팝업 생성
- ③ '미이용일 적용' 선택
- ④ '입력' 버튼 클릭
- ⑤ '급여일정등록 변경'에서 '미이용 일자' 선택 후 '저장 및 통보'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③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제31조의 '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 [단기보호]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단기보호

[illegible]

- ① 급여제공년월, 수급자의 급여종별을 선택하여 재조회 가능
- ② '입력' 버튼 누르면 '급여일정등록' 팝업 생성
- ③ 가족휴가제 사용자 여부, 급여 제공시간 입력
※ 가족휴가제는 급여이용 가능 대상자만 체크박스 활성화, 대상이 아닌 경우 비활성화
- ④ '입력' 버튼 클릭
- ⑤ '단기보호' 이용으로 일정을 등록한 최종 화면 예시

- 단기보호(연장)

급여계약내용 등록(제가) [npia107p01]

(단기보호)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2024년 1월 * 대상자 [] 조회 1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인정번호 2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3-03-14 ~ 2025-03-13 계약기간 2023-08-01 00:00 ~ 2025-03-13 24:00

급여일정등록-변경 연 4회 연장 연장 연간연장이용일수 0 일 연간연장이용횟수 0 회 확장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지급 이후 통보

삭제 연장 가족 휴가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급여일정등록 [npia115p02]

급여일정 단기보호연장 시작시간 종료시간

이용횟수 가족휴가제 0 0

계약통보서 해지 월 한도액

일자 1 2 3 4

등급 2 2 2 2

자격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해지여부

해지시간

월한도 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0 원 0 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2 2 2 2 2 2 2 2 2 2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5 6

연 4회 연장 연장 연간연장이용일수 9 일 연간연장이용횟수 1 회 확장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지급 이후 통보

삭제 연장 가족 휴가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삭제

5

연장 가족 휴가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장 가족 휴가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① 급여제공년월, 수급자의 급여종별을 선택하여 재조회 가능
- ② '연장' 버튼 누르면 '급여일정등록' 팝업 생성되고, '단기보호연장' 자동 체크
- ③ 급여 제공시간 입력
- ④ '입력' 버튼 클릭
- ⑤ '연장' 단기보호 이용으로 일정을 등록한 최종 화면 예시
- ⑥ 단기보호 '연장' 이용 시 연간연장이용일수, 연간연장이용횟수 반드시 확인
※ 타기관 단기보호 '연장'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이용일수 및 횟수 표출됨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③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시설급여]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npla103m01

급여계약통보서

1 계약년도: 전체, 유효, 계약기간: 2024-09-11 ~ 2024-12-11, 급여종별: 노인요양시설(재정법), 2 수급자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인정번호: L- 조회

3 계약내용

4 확인사항, 계약통보서이력, 계약통보서종합조회, 비급여계약내용등록, 전제목록

5 생년월일, 급여종류, 계약일자, 계약종료일, 최종급여제공일자, 비급여항목없음

6 급여명: 2등급

7 월별내역

연월	횟수	총금액
2025-06	0	0
2025-05	0	0
2025-04	0	0
2025-03	0	0
2025-02	0	0
2025-01	0	0
2024-12	0	0
2024-11	0	0
2024-10	31	2,319,110
2024-09	30	2,244,300
2024-08	31	2,319,110
2024-07	31	2,319,110
2024-06	30	2,244,300
2024-05	31	2,319,110
2024-04	30	2,244,300
2024-03	31	2,319,110
2024-02	29	2,169,490
2024-01	31	2,319,110
2023-12	31	2,250,600
2023-11	30	2,178,000
2023-10	31	2,250,600
2023-09	30	2,178,000

- ① 계약년도, 계약기간, 급여종별, 수급자명 등으로 선택하여 '조회'
 - ② 해당 수급자의 '계약내용' 확인 후 클릭하면
 - ③ '월별내역'에서 해당 급여종별 계약기간만큼 급여제공 년월별로 조회됨
 - ④ 통보하고자 하는 월의 '월별내역(행)' 더블 클릭 시 급여비용가산 및 감액산정 화면으로 이동
 - ⑤ 입·퇴소내용관리 입·퇴소 등록
- ※ 입·퇴소 등록방법은 '가감산 청구방법 안내자료' 급여비용 청구 교육자료 참고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급여계약통보서 해지] 목차

□ [재가급여 공통] 화면: 급여계약내용 등록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npia107p01]
×

※ 중복 점검은 저장 및 통보시 수행됩니다.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2024년 월
* 대상자

조회

장기요양대상자
2 계약통보서 해지
월금액 재산정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기초
인정유효기간
2021-09-01 ~ 2024-08-31
3 계약기간
2021-09-01 06:00 ~ 2024-08-31 24:00

급여일정등록 변경
※ 급여일정 종료시간이 약일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 확장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인쇄(달력)
지급 이후 통보

일자	요양요원	가족 여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휴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사자	N	08:00	11:00	180분	22																																	
서비스내용입력 상태																																						

이용횟수	월금액	타급여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승인금액	승인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22	1,163,360 원	1,163,360 원	1,306,200 원	0 원	1,304,270 원	0 원	0 원

계약통보서 해지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으로 급여일정을 등록하여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산정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등급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자격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해지여부																																			
해지시간																																			

- ①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에 '해지여부' 선택 및 '해지시간' 입력
 ※ 해지시간 입력 시, 계약시작일의 계약시간 및 실제 급여제공 종료 시간(태그 종료시간) 이후 시간으로 반드시 확인 후 입력 (해지 이후 복구 불가능)
- ② '계약통보서 해지' → 해지가 완료됨
- ③ 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해지일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 [시설급여] 급여계약통보서 해지

① 화면: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npla101m01

급여계약통보서 [?] [?] [?] [?] 초기화 저장 닫기

참가요양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참가요양인정번호 []

인정등급 2등급 인정유효기간 2021-09-03 ~ 2023-09-02 급여유효기간 [] 입력 저장

급여종류

기관유형 시설급여제공 참가요양기관 급여종류 []

계약자 및 계약내용

계약자 성명 [] 수급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핸드폰)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주소 []

계약내용

NO 삭제 계약일자 계약자성명 계약자전화번호 수급자명 수급자인정번호 SEQ 인정유효기간 계약기간 급여종류 해지

1	삭제	2023-09-03				102	2023-09-03 ~ 2025-09-02	2023-09-03 ~ 2025-09-02	노인요양(현행법)	해지
2		2022-07-08				101	2021-09-08 ~ 2023-09-02	2022-07-08 ~ 2023-09-02	노인요양(현행법)	해지

계약해지 [npla101p05]

해지 계약내용

수급자명 [] 생년월일 []

급여종류 노인요양(현행법) 계약일자 2023-07-21

계약기간 2023-07-21 1430 2024-12-04 2400

해지일자 []

해지 닫기

- ① '계약내용' 내 '해지' 버튼
 - ② '계약해지' 내 '해지일시' 입력
 - ③ '해지' '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해지일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 ※ 해당화면에서 계약해지를 한 경우 수가가산 및 산정비율 화면 수급자 퇴소등록 추가 처리 필요

② 화면: 수가가산 및 산정비율 - 입퇴소내용관리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 미접종자 신규입소 특례입소자이력관리

NO	성명	SEQ	인정유효기간	인정등급	급여계약기간	비고
1		102	2022-12-05 ~ 2024-12-04	2등급	2023-07-21 ~ 2024-12-04	계약해지

입퇴소

입퇴소이동관리 조회 저장 +행추가

NO	입퇴소유형	입소구분	입소일자	시간	퇴소구분	퇴소일자	시간	연계외박자	유형변경횟수	외박횟수
1	일반	입소	2023.09.13	10:30	퇴소	2023.11.24	14:00		0	0

계약해지 [npla101p05]

해지 계약내용

수급자명 [] 생년월일 []

급여종류 노인요양(현행법) 계약일자 2023-07-21

계약기간 2023-07-21 1430 2024-12-04 2400

해지일자 []

해지 닫기

- ① '퇴소 정보' 입력 후
- ② '저장' 시
- ③ 비고란에 '계약해지' 버튼 활성화
- ④ '계약해지' 내 해지일시 입력
- ⑤ '해지' → '급여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해지일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 [단기보호] 급여계약내용 등록 방법

급여계약내용 등록(제가) [npia107p01]

(단기보호)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2024년 • 대상자 [] 조회 1

장기요양대상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3-09-14 ~ 2025-03-13 계약기간 2023-08-01 00:00 ~ 2025-03-13 24:00

급여일정등록 변경 연 4회 연장 연장연장이용일수 0 일 연장연장이용횟수 0 회 입력 2

급여일정등록 [npia115p02]

급여일정 3

가족휴가제 사용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4 입력

급여일정등록 변경 연 4회 연장 연장연장이용일수 0 일 연장연장이용횟수 0 회 확장 입력

5

6

가족휴가제 이용일 4 원

- ① 급여제공년월, 수급자의 급여종별을 선택하여 재조회 가능
- ② '입력' 버튼 누르면 '급여일정등록' 팝업 생성
- ③ '가족휴가제 사용자' 체크 및 시작시간, 종료시간 입력
※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대상자만 체크박스 활성화, 대상이 아닌 경우 비활성화
- ④ '입력' 버튼 클릭
- ⑤ '가족휴가제 체크' 확인
- ⑥ 가족휴가제 이용 시 가족휴가제 이용일 반드시 확인
※ 타기관에서 가족휴가제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휴가제 이용일'에 이용한 일수 표출됨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월금액 재산정] 목차

☐ '월금액 재산정' 버튼 활용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npia107p01]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 대상자 조회

□ 장기요양대상자 계약해지 월금액 재산정

* 설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 자격 * 감경/60% * 인정유료기간 2022-07-28 ~ 2025-07-27 계약기간 2022-07-28 00:00 ~ 2025-07-27 24:00

□ 급여일정등록 변경 적기통보내역 조회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 지급 이후 통보

가측요양 이용 여부를 선택하세요. ☐ 확장

석제	프로그램 관리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미이용 (코로나)	횟수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50	17:15	505 분				24	전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서비스내용 입력 상태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자중	

이용횟수	인지활동형 횟수	타기관포함 인지활동횟수	월금액	타급여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23	23	23	1,211,870 원	1,604,080 원	1,620,980 원	0 원	0 원

□ 급여계약해지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으로 급여일정을 등록하여야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산정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등급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자격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강경	
해지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지시간																																	

- ① 일정 등록 및 일정 수정 후 반드시 '월금액 재산정' 클릭
 - ② 등록한 급여일정 내역과 이용횟수, 월금액, 월 한도액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월금액 재산정' 클릭
 - ③ 다음연도 수가 변동 시 12월 이전에 일정등록한 건은 월금액, 월한도액 등이 자동 반영 되지 않음 → 해당년도 1월에 '월금액 재산정' 클릭
- ▶ 공단 통보 전 반드시 월금액 재산정 → 저장 및 통보 버튼 클릭

☐ '전체 월금액 재산정' 버튼 활용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npia103m01] 급여계약통보서

* 계약년도 전체 ☐ 유효 * 계약기간 2026-07-04 ~ 2026-10-04 * 급여종별 전체

* 수급자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인정번호 L- 조회

□ 계약내용 전체 월금액 재산정 확인사항 계약통보서이력 계약통보서종합조회 비급여계약내용등록 전체목록

성명	등급	생년월일	급여구분	급여종류	계약일자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최종급여 제공일자	비급여 항목없음

- ▶ 기관에서 입력한 수급자 전체의 월금액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일괄로 처리 가능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지급이후 통보 등록] 목차

□ '지급이후 통보' 등록방법

○ 지급이후 통보란?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지급통보서가 통보된 이후에는 급여제공 일정이 수정 불가하나 자진환수, 일정누락의 사유로 추가청구*가 필요할 경우 청구 편의를 위해 단순 일정등록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화면

- ① 급여계약통보서 상 '저장'이 되어 있고 심사지급결정이 통보된 월에 대해 '지급이후 통보' 버튼 자동 활성화
 - ② 지급이후 통보 클릭
 - ③ 추가사유 선택
 - ④ 입력 클릭 후 일정 등록
 - ⑤ '종사자 검색' 팝업 표출되며, 급여일정 등록방법은 동일함
- ※ 자진환수, 일정누락 등의 사유로 추가청구가 필요한 경우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에 공단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 편의를 위해 단순 일정 등록만 가능함

참고 추가청구 ... '방문·입소형 청구방법 안내자료' 급여비용 청구 교육자료 참고

- 원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청구한 일자의 일부 서비스급여시간에 따른 비용이 누락된 경우
- 추가청구 후 심사불능 명세서를 보완하여 청구
- 환수 후 환수된 날짜에 대한 추가청구(추가청구 가능한 사유가 별도로 존재)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확인사항] 목차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npla100m01 급여계약통보서 초기화 저장 인쇄 닫기

* 계약년도 전체 ☐ 유효 * 계약기간 2023-10-26 ~ 2023-10-26 * 급여종별 전체

* 수급자명 * 계약종류 * 계약일자변화번호 조회

□ 계약내용

확인사항 [npla100m01]

□ 인정유효기간 변경내역 엑셀 다운로드

수급자명	생년월일	현재등급	현재인정유효기간	계약기간	변경사유
		5	2021-10-27~2023-10-26	2023-06-02~2023-10-26	갱신신청
		5	2021-10-27~2023-10-26	2023-06-02~2023-10-26	갱신신청
		4	2023-04-20~2023-10-05	2023-04-25~2025-04-19	등급변경신청
		4	2023-04-20~2023-10-05	2023-04-25~2025-04-19	등급변경신청

□ 사망의심 내역 엑셀 다운로드

확인일자	수급자명	장기요양인정번호	급여종류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20230109			방문요양	20221221	20241230

□ 당월 급여계약 미통보 내역 엑셀 다운로드

수급자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계약기간
		방문요양	2023-08-03 ~ 2025-08-01
		방문목욕	2023-04-28 ~ 2025-04-06
		방문목욕	2022-07-17 ~ 2024-07-05
		방문목욕	2023-08-29 ~ 2024-06-07
		방문목욕	2023-03-03 ~ 2025-03-02

□ 자격변경내역 엑셀 다운로드

수급자명	생년월일	변경일	변경전자격	변경후자격
		2023-09-20수	일반	의료급여

□ 계약등록 후 입소이용의뢰서 미승인자 엑셀 다운로드

수급자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계약기간
		방문요양	2023-10-02~2025-08-31

□ 통보안내문 미확인 내역 상세보기

통보년월	안내문종류	급여종류
	지연통보	방문요양
	수정통보	방문요양

조화결과 - 건

- 인정유효기간 변경내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으로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조회(현재 정보)
 - ※ 수급자의 변경된 인정정보를 보여주지 않음. 변경된 경우 인정서 등 서류 확인 필요
 - 자격변경내역: 일반, 의료급여, 기초로 변경된 자격 확인
 - 사망의심 내역: 사망 → 계약해지
 - 계약등록 후 입소이용의뢰서 미승인자
 - 당월 급여계약 미통보 내역
 - 통보안내문 미확인 내역
 - ① 지연통보: 급여제공 전월 말일 이후 일정 등록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 ② 수정통보: 등록된 서비스 일정의 종료시간 이후 일정을 수정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 ※ 인정유효기간 변경내역, 자격변경 내역의 경우 3개월 이내 변경이력이 조회됨

급여계약통보서 화면 구성 [인쇄] 목차

급여계약통보서(인쇄) [noia107a01]

※ 중적 점검은 저장 및 통보시 수행됩니다(방문요양) 저장 및 정보 인쇄

년월: 대상자: 조회

장기요양대상자: 계약통보서 해지 월급액 재산정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기호: 인정유료기간: 2023-11-01 ~ 2025-10-31 계약기간: 2023-11-01 00:00 ~ 2025-10-31 24:00

급여원점등록번호: ※ 급여원점 등록시간이 익월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확장 의뢰 자녀발생 수정 지난원정 수정 인쇄 인쇄(달력)

REXPERT PRINT

출력일자: 2023. 11. 27 14:05

급여계약통보서(인쇄)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간	성명	장기요양관리번호	자격
인정유료기간: 2023-11-01 ~ 2025-10-31	계정기간: 2023-11-01 00:00 ~ 2025-10-31 24:00	급여계약기간	

요양요원	프로그램 관리자	가족 여부	가족 관계	자격	종료 시간	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적																																			

서비스내용등록 상태: 13:00~16:00 21

이용일수	인정활동원수	타기관포함 인정활동원수	월금액	타기관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승인금액	승인초과금액	월한도 미보통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0 원

년 월 방문요양 서비스 일정표 (수급자)

수급자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분인부담률(차별)
			5등급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기초)	6 (기초)	7 (기초)	8 (기초)	9 (기초)	10 (기초)	11 (기초)
12 (기초)	13 (기초)	14 (기초)	15 (기초)	16 (기초)	17 (기초)	18 (기초)
19 (기초)	20 (기초)	21 (기초)	22 (기초)	23 (기초)	24 (기초)	25 (기초)
26 (기초)	27 (기초)	28 (기초)	29 (기초)	30 (기초)		

급여종류	서비스(서비스명)	시간	횟수	수가	총금액
방문요양	180분이상(인정활동 방문요양)	3시간	21	52,880	1,110,480
방문요양	합계	6시간	21		1,110,480

※ 서비스명과 횟수는 급여일정의 수가산정 기준입니다.

- ☐ 인쇄: 급여계약통보서와 동일하게 인쇄(공통)
- ☐ 인쇄(달력): 서비스명·수가산정 기준 → 달력 형식으로 인쇄
(단,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급여이용 시 인쇄(달력) 출력 가능)

급여계약통보서 다빈도 질의 목차

Q1

급여 일정등록화면에 등록한 내역과 화면에 보이는 이용횟수, 일일 수가, 월금액 등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빈도

A1

- ①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저장 및 통보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 ② **급여계약내용 등록 및 일정 수정 시** 반드시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화면 우측 상단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고, **저장 및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

12월 ~ 1월(다음연도) 일정 등록 시 주의

연말(12월)에 급여일정 등록 후 다음연도에 수가가 변동이 되면 12월에 등록한 내용이 1월 이후 변경된 수가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가 변동이 적용되는 1월 이후는 반드시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클릭하여 월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월 한도액이 초과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방문요양]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를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항목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2

- 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급여 2종류가 있으며 입소이용의뢰서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 수가는 '종일 방문요양' 및 '종일 방문요양(가산)'입니다.
- ②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에 서비스 종류를 '가족휴가제'가 아닌 '종일 방문요양'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3

급여계약을 등록하려고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니 '장기요양대상자 정보가 다릅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이 뜨며 진행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A3

- 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관리번호, 인정등급, 인정유효기간, 급여유효기간(시설 급여만 해당) 중 하나라도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팝업이므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특히 대상자 정보 중 **인정유효기간을 잘못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
- ② 수급자의 성명(개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Q4

등급변경으로 급여계약을 등록하려고 하니 '해당 계약기간에 이미 급여계약내역이 있어 중복등록이 불가합니다' 라는 팝업이 뜨는데 왜 그런가요?

A4

- ☐ 등급변경된 경우 기존 급여계약을 새로운 인정유효기간 시작 전일로 해지하고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계약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Q5

수급자의 급여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급여계약 해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빈도

□ 재가급여 계약해지 처리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에서 해지 날짜 체크 및 시간 입력 후 '계약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해지가 완료되면 해지날짜 이후의 일정이 자동 삭제됩니다.

A5

□ 시설급여 계약해지 처리

- 방법1: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 화면에서 퇴소구분, 일자, 시간을 입력 후 '계약해지'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일자를 입력합니다.

- 방법2: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서 '해지'버튼을 눌러 해지일시를 입력합니다.

※ '방법2'로 해지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 화면에서 추가로 퇴소등록 필수

Q6

급여계약 해지일자를 잘못 등록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다빈도

A6

① 해지하려고 했던 일자 이 후의 일자로 잘못 해지한 경우 → 이 전 날짜로 다시 계약 해지 등록

예시 2026년 7월 5일에 해지하려고 했는데 7월 10일로 잘못 해지한 경우
⇒ 7월 5일로 다시 계약해지 등록 가능

② 해지하려고 했던 일자 이 전 일자로 잘못 해지한 경우 → 누락된 급여계약 내용을 추가 등록

예시 2026년 7월 5일에 해지하려고 했는데 7월 1일로 잘못 해지한 경우
⇒ 누락된 계약기간(7월 1일 ~ 7월 5일)을 추가계약 등록



Q7

지난 급여일정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다빈도

- 급여제공 종료시간이 경과한 급여일정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계약내용 등록]** 화면에서 **'지난일정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후 '저장 및 통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A7

관련 질의

Q.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심사지급통보서가 통보된 후 급여계약통보서의 급여일정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심사지급통보서가 통보된 이후에는 급여계약통보서의 급여일정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등의 사유로 추가청구를 하기 위해 급여일정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지난일정 수정'버튼이 아닌 '지급 이후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일정 등록해야 합니다.

※ '지급 이후 통보' 버튼은 심사지급통보서가 통보된 이후의 청구 편의를 위한 기능

Q8

복지용구 대여 중인 경우 시설 급여계약 등록이 제한되나요?

A8

-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므로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급여계약 등록 시 '복지용구 대여를 해지하거나, 구매일 이후에 시설급여가 이용 가능합니다'의 안내 팝업이 생성되고 계약등록이 제한됩니다.

※ 단, 시설급여 입소하는 당일 까지, 퇴소하는 당일부턴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능

Q9

급여일정 등록 시 '요양보호사의 급여일정이 중복됩니다' 라는 팝업이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 요양보호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제공 중인 급여일정과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하려는 일정이 겹치는 경우 팝업창이 뜨며 등록이 제한됩니다. 동일 기관의 일정중복인 경우는 기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고 타 기관 중복일 경우 요양보호사를 통해 급여일정 확인 후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10

재가기관 이용 종료 후 시설에 입소하였는데 시설에서 급여계약을 등록하려고 하니 '현재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며 입력이 제한됩니다. 왜 그런가요?

A10

- ☐ 기존 급여계약이 시설 입소 일시 이전으로 정확히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직전에 이용했던 기관과 급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과거에 이용했던 다른 기관과의 급여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 동일 재가기관에서 동일 계약기간에 여러 건의 계약을 입력한 상태에서 어느 하나만 해지한 경우
- ☐ 다른 기관에서의 급여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수급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서 해지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일정을 180분 입력하려고 하니 '일반 방문요양은 120분 이내로 입력해주시시오'라는 팝업이 뜨는데 왜 그런건가요?

A11

- ☐ 급여일정 등록 시, 프로그램 관리자 등록을 누락하여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로 전산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도 함께 입력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 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